

**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
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49호(2020.11.12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된 ‘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’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장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)

- 명 칭 :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-52, 47-70
- 면 적(변경)
 - [기정] 1,895.0m²
 - [변경] 1,900.0m²

2. 촉진지구 지정일(변경없음)
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

1) 토지세목조서

－ [기정]

연번	소재지			지목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지번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		본번	부번								
1	강북구 수유동	47	52	대	1,514.8	[위탁자] 주식회사 에드기수유	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59(수유동)	1/1	-	-	-
2		47	70	대	380.2	[수탁자] 주식회사 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1/1			
합계					1,895.0	-					

－ [변경]

연번	소재지			지목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지번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		본번	부번								
1	강북구 수유동	47	52	대	1,519.8	[위탁자] 주식회사 에드가수유	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, 3층(상봉동)	1/1	-	-	-
2		47	70	대	380.2	[수탁자] 교보자산 신탁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(서초동,강남교보타워)	1/1			
합계					1,900.0	-					

■ 변경사유 : 지적확정 측량 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2) 물건조서 : 삭제

■ 변경사유 :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삭제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기정	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	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	1,895.0	증) 5.0	1,900.0	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(변경없음)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)

○ 명 칭 :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
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-52, 47-70

○ 면 적(변경)

－ [기정] 1,895.0㎡

－ [변경] 1,900.0㎡

○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
4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주택건설용지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임대주택
합 계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－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 : [붙임] (도면게재생략)

[붙임]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기정	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	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	1,895.0	증) 5.0	1,900.0	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나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: 게재생략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

가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(1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계	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(2)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해당사항 없음)

(3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) : 게재생략

나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

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(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- [기정]

도면 표시번호	가구번호	면 적(㎡)	위 치		비 고
			지 번	면 적(㎡)	
-	-	1,895.0	수유동 47-52	1,514.8	공동개발 지정 (역세권 청년주택)
			수유동 47-70	380.2	

- [변경]

도면 표시번호	가구번호	면 적(㎡)	위 치		비 고
			지 번	면 적(㎡)	
-	-	1,900.0	수유동 47-52	1,519.8	공동개발 지정 (청년안심주택)
			수유동 47-70	380.2	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나)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다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라)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: 게재생략

3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4. 방재계획(변경없음)

5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1) 토지세목조서(변경)

- [기정]

연번	소재지			지목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지번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		본번	부번								
1	강북구 수유동	47	52	대	1,514.8	[위탁자] 주식회사 에드거수유	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59(수유동)	1/1	-	-	-
2		47	70	대	380.2	[수탁자] 주식회사 무궁화신탁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역삼동, 포스코피앤에스타워)	1/1			
합계					1,895.0	-					

－ [변경]

연번	소재지			지목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	관계인		
	행정동	지번			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
		본번	부번								
1	강북구 수유동	47	52	대	1,519.8	[위탁자] 주식회사 에드가수유	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, 3층(상봉동)	1/1	-	-	-
2		47	70	대	380.2	[수탁자] 교보자산 신탁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(서초동,강남교보타워)	1/1			
합계					1,900.0	-					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

2) 물건조서 : 삭제

■ 변경사유 :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내용 삭제

3) 토지취득방법(변경없음)

4)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(변경없음)

6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7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8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위 치				공급대상자	공급시기	비 고
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	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		
합계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－	－	－
주택건설용지	1,895.0	증) 5.0	1,900.0	100.0	자체사용	승인 후	－

■ 변경사유 : 예정좌표측량성과도에 따른 대지면적 조정